

2017년 보건복지 정책 및 동해시 복지시책 설명



목차

- 2017년 보건복지 정책
- 동해시 예산 현황
- 사회보장제도 안내
- 동해시 특수 시책
- 읍면동 복지허브화

찾아가고 꼼꼼히 배려하는



보건복지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건복지부



2017 보건복지 정책 추진 방향

목표

- (촘촘한 복지)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체감도 실현
- (미래 준비) 인구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

추진 전략 및 과제

1.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

- ① 저소득층 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② 찾아가는 복지 및 국민체감도 향상
- ③ 아동·장애인·노인 등 권익 증진
- ④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 ①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 ② 필수·공공의료 및 감염병 대응 강화
- ③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 ④ 보건산업 성과 창출 및 일자리 확대

3. 인구위기 대응 강화

- ① 저출산 대응체계 확립
- ② 출산·양육지원 시스템의 체감도 제고
- ③ 고령사회 대비 강화

인프라

조정 체계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 기능 강화

전달 체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진료정보교류체계 구축

1. 저소득층 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

1)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 정착

○ (생계급여) 최대 5.2% 인상(4인 가구, 月127→134만원)하고,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확대 방안 검토*

* 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17.7월)

< 기초생활보장제도 >



< 긴급복지 지원 >



1. 저소득층 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

3) 일자리 지원 및 창출

- (재정지원 일자리) 노인·자활 등 일자리 1만 개 증가(64만→65만)
-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5만 개 증가(70만→75만)

2. 찾아가는 복지 및 국민 체감도 향상



1)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전국 확산

○ ('17년 목표) '17년에 2,100개 읍면동('16년 980개)으로 대폭 확대하고,

'18년에는 모든 읍면동(3,502개)으로 확대

* 읍면동 변화:(종전)복지사업 접수창구→(변화)어려운 이웃발굴, 필요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 '16년 실적 : 어려운 이웃 발굴·지원 57만건(공적지원 18만건, 민간연계 36만건 등), 방문상담 69만건

○ (지원 강화)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지원*, 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 보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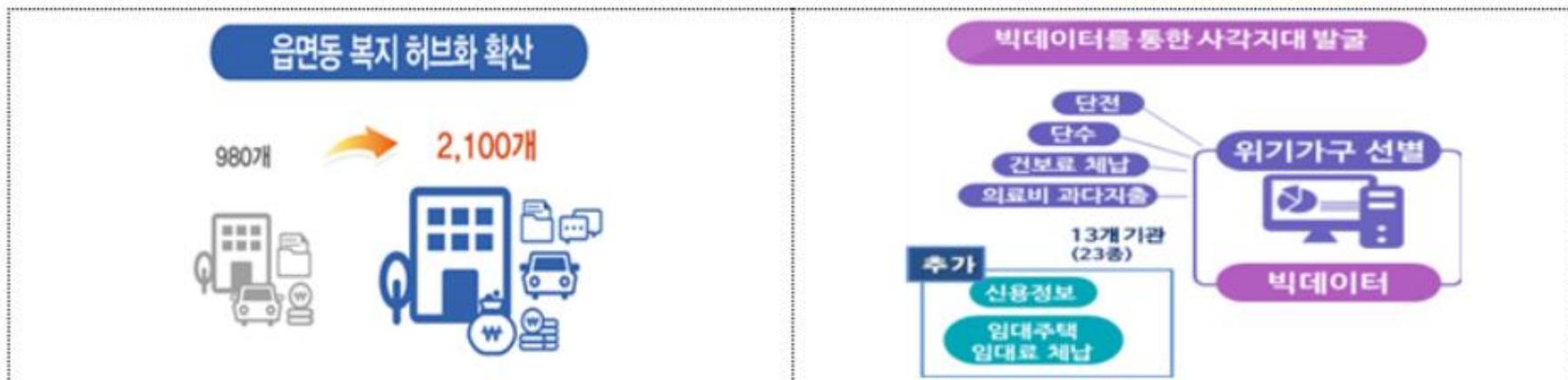
* ('16년) 선도지역 33곳 우선 지원 → '17년 추진 읍면동(2100개) 지원

○ (인력 총원) 복지담당공무원 1,623명 조기 배치('17.6월)

2. 찾아가는 복지 및 국민 체감도 향상

2) IT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 (빅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발굴유형을 생애주기·대상자 별로 다각화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하고, 연계정보를 추가(23종→25종)*
 - 신용불량자, 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자 정보
- (민·관 정보공유) 복지 중복·누락 방지 및 복지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복지자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17.3월 ~)



3. 아동·장애인·노인 등 권익 증진

1) (아동) 아동학대 사전예방 - 사후 지원체계 강화

○ 위기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17.7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의료지원 제도화 등 실시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 활용, 학대 등 위기아동 조기발굴

아동학대 방지체계



3. 아동·장애인·노인 등 권익 증진



2) a. (장애인) 학대예방 및 피해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18개소, 1월 ~)

b. 서비스 종합판정* 도입 등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실시(4월)

* 장애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

-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준비에 만전

3. 아동·장애인·노인 등 권익 증진



**3) (독거노인) 신규대상자 발굴(반기별) 등으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대자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예방·처벌·피해지원 강화**

▲ 기본서비스(취약독거노인 지원) : ('16년) 22만 → ('17년) 22.5만 명

▲ 종합서비스(거동불편노인 지원) : ('16년) 3.7만 → ('17년) 4.1만 명

○ 민간후원을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도 활성화

* 민간기업 임직원이 독거노인과 1:1결연을 맺어 안부확인 및 자원봉사

4) (정신질환자) 비자의(非自意) 입원 절차를 통한 인권 증진

* 입원 2주 내 2명의 의사가 진단, 1달 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심사 시
범사업

4.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

- (추가 보장강화)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14 ~ '18)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 등)에 대한 보장 강화 추진
-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 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자원 확보

4.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

분야	과제명	세부 실행과제	시행시 기	
임신, 출산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	10월	
청년장년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치료의 보장성 강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10월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	10월
고가 검사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10월	
취약, 계층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12월	

4.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방향)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편
 - (방안)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
과 비중을 상향 조정
 -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인상의 대상 및 폭을 고려하여 피부양자는 단계적으
로 축소
- * 1월 하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개편안 공론화 추진

5.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 확립



1) 저출산 극복 총력 대응

○ (주도적 대응 강화)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2월)을 계기로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위원회 내 인구정책개선기획단 구성·운영, 위원회 중심의 저출산 대응 주요 이슈 검토 및 사회적 논의 주도

○ (기본계획 보완) 저출산 분야 핵심 대책 심층 점검, 범정부적 보완방안 마련

* (예시) 초등돌봄 등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근로시간 단축, 유연·재택근무 등)

5.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 확립



2) 전 사회적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

○ (우수 지자체 지원) 저출산 극복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 확대

*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 대응분야 별도 신설,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저출산 대응 선도모델 공모 등 추진

○ (민간 참여) 결혼·출산·양육친화 기업에 대한 유인책* 강화, 공공기관 평

가에 관련지표 반영 대폭 확대, 양육친화적 문화 확산

* (예시) 결혼·출산·양육친화기업에 대한 기업공시반영, 정부조달 우대

6. 출산·양육지원 시스템의 체감도 제고



1)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임신) 소득 수준별로 난임시술비를 차등 지원(1~9월)하고 '17.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통한 품질 관리

◇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확대

- (1단계: '16.9~'17.9) 일정 소득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지원횟수 상향
- 지원대상 : 5만명 → 9.6만명(소득기준폐지 2.5만명 + 지원금액·횟수 상향 2.1만명 추가)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365만원)까지
체외수정 3→ 4회, 지원금 190→240만원
- (2단계: '17.10~)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 의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
-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하여,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 강화

6. 출산·양육지원 시스템의 체감도 제고

- 고위험임산부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상자도 추가 지원*

* 그간 50만원 일률 공제 방식에 따라 지원금액 축소로 인한 혜택 감소 최소화

<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지원 방식과 예시 >

▶ ('16년) 50만원은 일률 공제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
담금의 90%를 지원

▶ ('17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016년	2017년
비급여 진료비 200만원	65만원 부담	20만원 부담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50만원 부담	5만원 부담

○ (출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 확대(0~12개월→0~24개월)하고, 조제분유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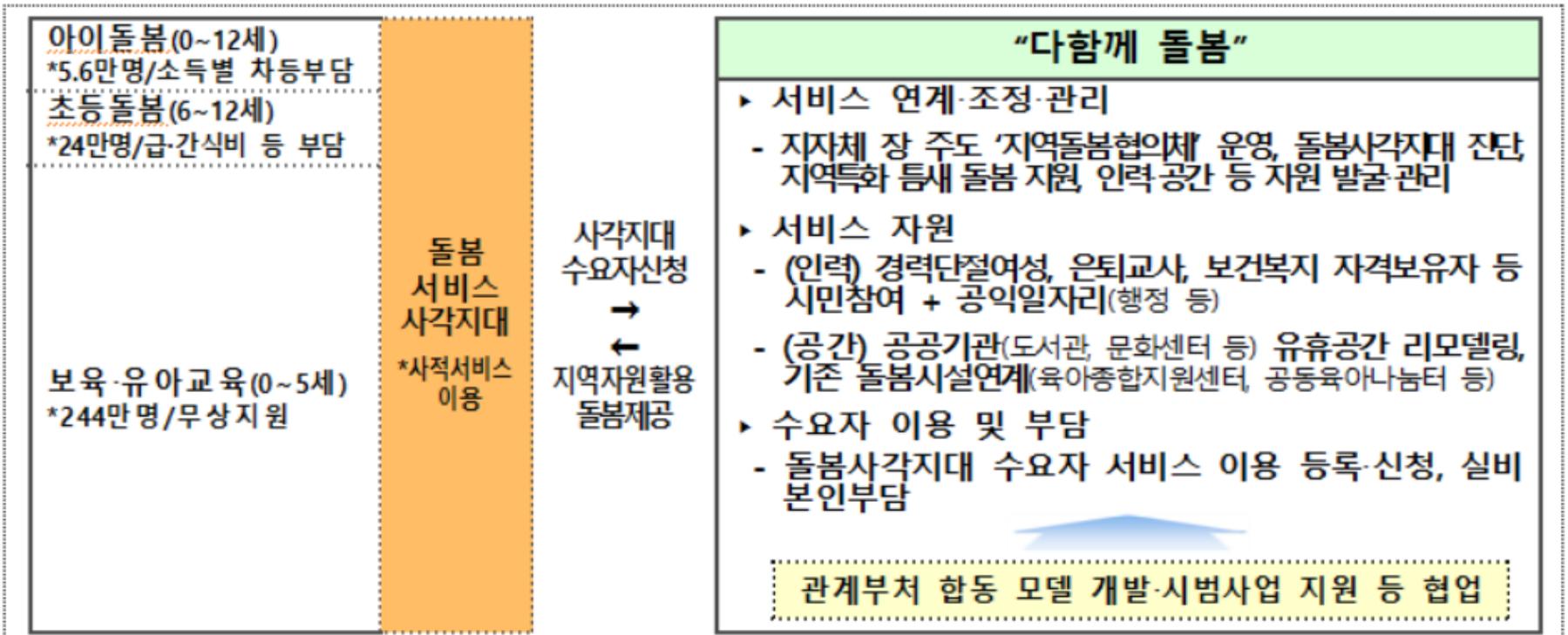
원대상* 확대 * 부자·조손가정 아동 등

6. 출산·양육지원 시스템의 체감도 제고



○ (돌봄) 출·퇴근 시간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눔·시민참여·공익일자리 등과 연계한 '(가칭)다함께 돌봄사업' 모델 개발 검토

*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 협의, 모델 연구, 시범사업 등 추진



7. 고령사회 대비 강화

1) 전 국민 노후준비 여건 조성

○ (노후준비 서비스) 연령·성·직종별 지표에 따른 **4대 분야**(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개인맞춤형 컨설팅** 대폭 확대



- 온라인 진단 서비스 ('16) 3만명 → ('17) 5만명
오프라인 진단·상담 서비스 : ('16) 8만명 → ('17) 9만명
- 公·私연금 **통합정보 제공범위 확대**(농지·직역 연금까지 포함)

7. 고령사회 대비 강화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

- *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이 보험료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납부 제도 적극 홍보·시행
- * 일정급여 이상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가입 확대,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재편·확대
- 제4차 재정계산('18년) 결과 발표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실질적 논의 진행(' 17.4~' 18.8)

7. 고령사회 대비 강화



- (노인일자리) 시장친화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탄력적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전환 촉진(신규사업 개발비 3천만 원), 성과에 따른 다
년도 재정지원으로 개편, 최소고용조건 완화*
 - * 기존 30명 → 업종별 10 ~ 20명으로 차등화(업종별 고용규모 등 고려)
 - 활동수당 인상(20만→22만 원), 재능나눔 수혜대상 확대(노인→전계층)
등 공익형 일자리 사업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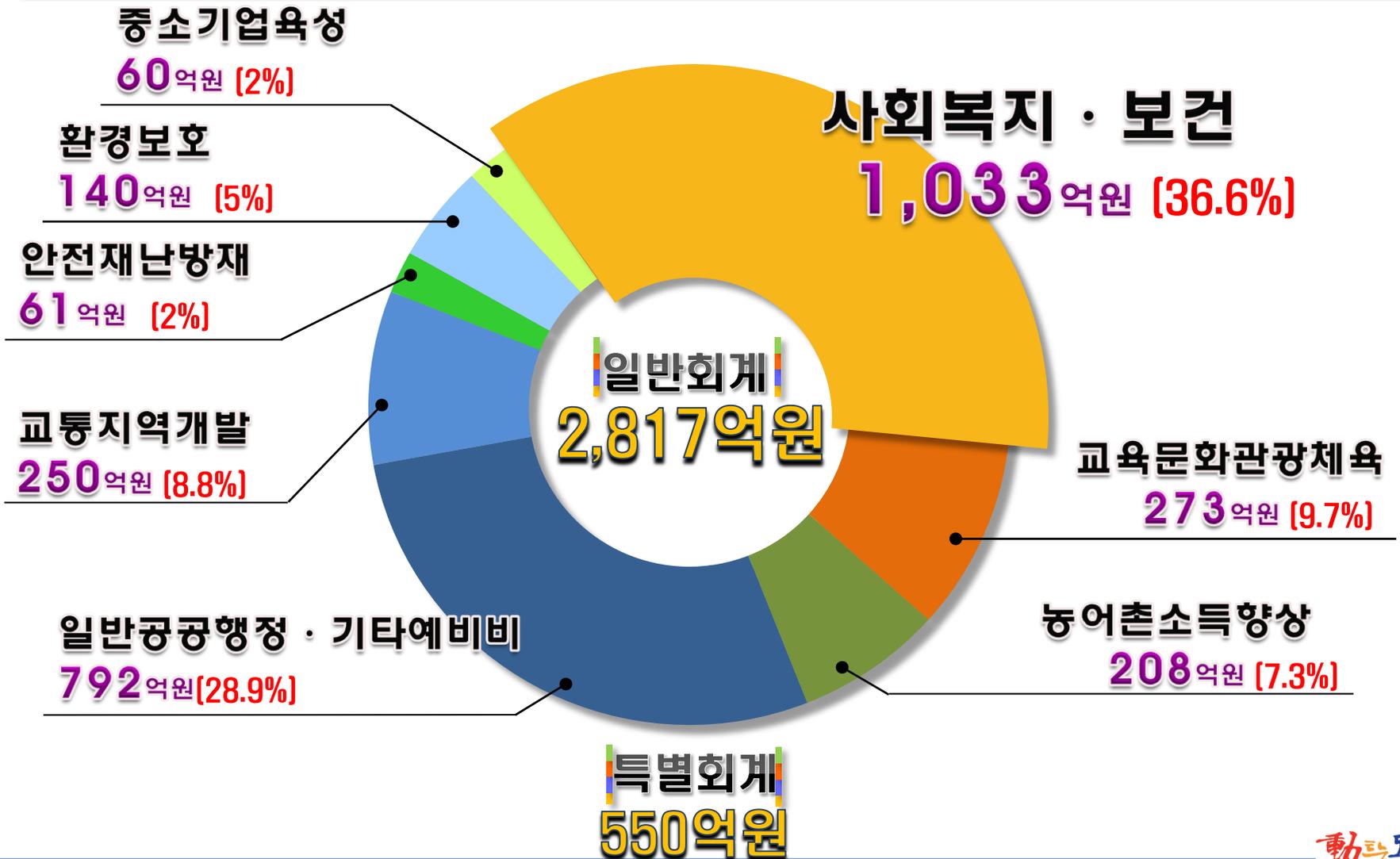
7. 고령사회 대비 강화



- (노인일자리) 시장친화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탄력적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전환 촉진(신규사업 개발비 3천만 원), 성과에 따른 다
년도 재정지원으로 개편, 최소고용조건 완화*
 - * 기존 30명 → 업종별 10 ~ 20명으로 차등화(업종별 고용규모 등 고려)
 - 활동수당 인상(20만→22만 원), 재능나눔 수혜대상 확대(노인→전계층)
등 공익형 일자리 사업 내실화

2017년 동해시 예산편성 현황

총예산 3,367억원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
-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
비스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사회복지 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

1차 사회안전망 (5대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1977년 시행, 1989년 전국민확대)
- 국민연금 (1988년 시행, 1999년 전국민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 (1964년 시행, 2000년 1인 사업장 확대)
- 고용보험 (1995년 도입, 1998년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시행)

2차 사회안전망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2007년 전자바우처 시행)
- 긴급복지 지원제도 (2006년 시행)

3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 시행)
- 의료급여제도 (1977년 시행)
- 기초노령연금(2008년~2014년)기초연금(2014년 7월 시행)
- 장애인연금 (2010년 7월 시행)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 신청

- 급여신청(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전·월세계약서 등)
- 근로능력 관련서류(진단서 등)

1. 신청인: 동주민센터 방문

- 적정복지급여 선별
- 신청구비서류 점검
- 적정성 여부 초기상담

2. 동주민센터: 초기상담



4. 시청(사업팀) : 결정통지

- 결정통보서 발송(급여혜택 등 안내)
- 각종 요금감면 안내

3. 시청(조사팀) : 자산조사 실시

- 소득, 재산조회(신청인, 부양의무자)
- 방문 실태조사
- 근로능력, 취업상태 ※30~60일 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2.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기 준 액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생 계	중위소득 30% 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 료	중위소득 40% 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 거	중위소득 43% 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 육	중위소득 50% 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중위소득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함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3.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부양능력 판정소득		부양의무자							* 취약계층 :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 중증질환자 * 미약 : 없음과 있음 사이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수급자	없음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없음 기준은 공통
	있음(1인)	2,314,103	3,475,621	4,302,087	5,128,552	5,955,017	6,781,483	7,607,948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2,446,338	3,475,621	4,302,087	5,128,552	5,955,017	6,781,483	7,607,948	
	있음(2인)	2,778,711	3,940,229	4,766,695	5,593,160	6,419,625	7,246,091	8,072,556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3,305,861	4,165,385	4,776,969	5,593,160	6,419,625	7,246,091	8,072,556	
	있음(3인)	3,109,297	4,270,815	5,097,281	5,923,746	6,750,211	7,576,677	8,403,142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3,917,446	4,776,969	5,388,554	6,000,138	6,750,211	7,576,677	8,403,142	
	있음(4인)	3,439,883	4,601,401	5,427,867	6,254,332	7,080,797	7,907,263	8,733,728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4,529,030		5,388,553	6,000,138	6,611,722	7,223,307	7,907,263	8,733,728		
있음(5인)	3,770,469	4,931,987	5,758,453	6,584,918	7,411,383	8,237,849	9,064,314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5,140,614	6,000,138	6,611,722	7,223,307	7,834,891	8,446,475	9,064,314		
있음(6인)	4,101,055	5,262,573	6,089,039	6,915,504	7,741,969	8,568,435	9,394,900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5,752,199	6,611,722	7,223,307	7,834,891	8,446,475	9,058,060	9,669,644		
있음(7인)	4,431,641	5,593,159	6,419,625	7,246,090	8,072,555	8,899,021	9,725,486	수급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6,363,783	7,223,307	7,834,891	8,446,475	9,058,060	9,669,644	10,281,228		
기초공제재산 (부양의무자)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 : 2억2,800만원, 중소도시 : 1억3,600만원, 농어촌 : 1억150만원 * 금융 : 50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4.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4차(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4. 지원내용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위:만원)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외)
1인가구	200천원	178천원	147천원	136천원
2인가구	231천원	200천원	158천원	147천원
3인가구	273천원	242천원	189천원	178천원
4인가구	315천원	283천원	220천원	.200천원
지원내용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4. 지원내용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을 지원해드립니다

교육급여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41,200원	연1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4,100원	1,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31,300원	연1회 지급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4. 지원내용

해산급여

출산한 경우 아이 1인당 60만원 지급

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공간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기타(소득상실, 1개월 이상 단전, 교정시설 출소 6개월 이내, 초기 노숙인 등)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이하 (예 : 4인기준 335만원)
- 재산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제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식료품비, 의복비 등)	115.7만원 (4인기준)	6회
	의료	의료서비스 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주거비용 지원)	41.8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지원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원)	143.3만원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수업료 등 학비 지원	초등 21.9 중등34.8 고등 42.7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기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 (동절기 연료비(9.4만원),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 금 50만원 이내 등)		1회 (연료비6회)

해오름 1004운동(<http://www.dh1004.or.kr>)

사업목적

-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
- 소액 기부문화 정착을 통한 어려운 이웃돕기 사랑운동 실천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0년 7월 1일부터~
- 모금대상 : 동해시민 및 후원희망자
- 내용 : 1인 1구좌 1,004원 이상 후원 가입
- 참여방법 : 시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
- 지원대상: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 총 모금액 : 838백만원
- <지금까지 지원실적>: 4,160가구 345백만원
 - 저소득가구1,100가구 245,726천원, 상하수도장기체납자 6가구 1,475천원
 - 건강보험장기체납자 20가구 9,850천원,명절위문금 2,986가구 59,720천원
 - 희망디딤돌 네트워크사업비 48가구 28,553천원

동해시 해오름천사운동

DONGHAE BEAUTIFUL DONATION

작은 정성과
실천의 기적

후원문의 및 상담

033-535-2093

동해시청 복지과

033-530-2091

후원하기



총모금액

2,008 원
참여인원 1 명

2013-05-21	[일반인]성명진	1,004원
2013-05-01	[일반인]성명진	1,004원

후원의 집



공지사항

+ 더보기

- 희망2014나눔캠페인 2013-12-03
- 동해시 해오름천사운동 홈페이지 오픈 2013-03-15
-
-

최근게시물

+ 더보기

- (2013-10-01) 작은 나눔이 모여 큰 사랑 만들어요 2013-10-01
- (2013-09-30) '해오름천사운동' 동해시청 공무원 앞장 2013-10-01
- (2013-09-12) 심규연 동해시장 권한대행 2013-10-01
- (2013-09-12) 동해 망상해오름가족호텔 성금 기탁 2013-10-01



희망디딤돌 네트워크사업

사업목적

-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더욱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순수 민간 참여에 의한 비예산 복지시책 확산)

사업내용

- 추진배경 : 저소득가구 대부분 임차가구로 공적지원 불가 주거환경열악으로
주거소외계층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개선 방안 절실
- 지원대상 : 허가과 소관 "집수리 지원사업" 제외 가구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사업추진 체계



희망디딤돌 네트워크사업 참여단체 현황

구분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집수리 분야	참아름다운세상만들기(김경남)	발한동 대림상가 102호	도배,장판,청소 등
	참사랑나누리(김현욱)	동해대로 5076	청소 및 경비수
	한국열관리협회(함영국)	천곡2길 10	보일러
	인라이프가구(권수만)	동해역길 114	가구수리
	태강계전(채희태)	효자로 735	전기
	창신유리(한기명)	발한로 215-2	샷시, 방충망
	모닝타일(심승중)	대동로 261-9	설비
	창신(최태순)	전천로 273-1	소독, 방역 등
	성지인력(김기영)	발한로 256-1	지붕수리 및 교체
	묵호성당(이갑재)	발한로 161	화장실 변기 설치
해군1함대 제1수리창 (심중호)	대동로 430	집수리 전반	

보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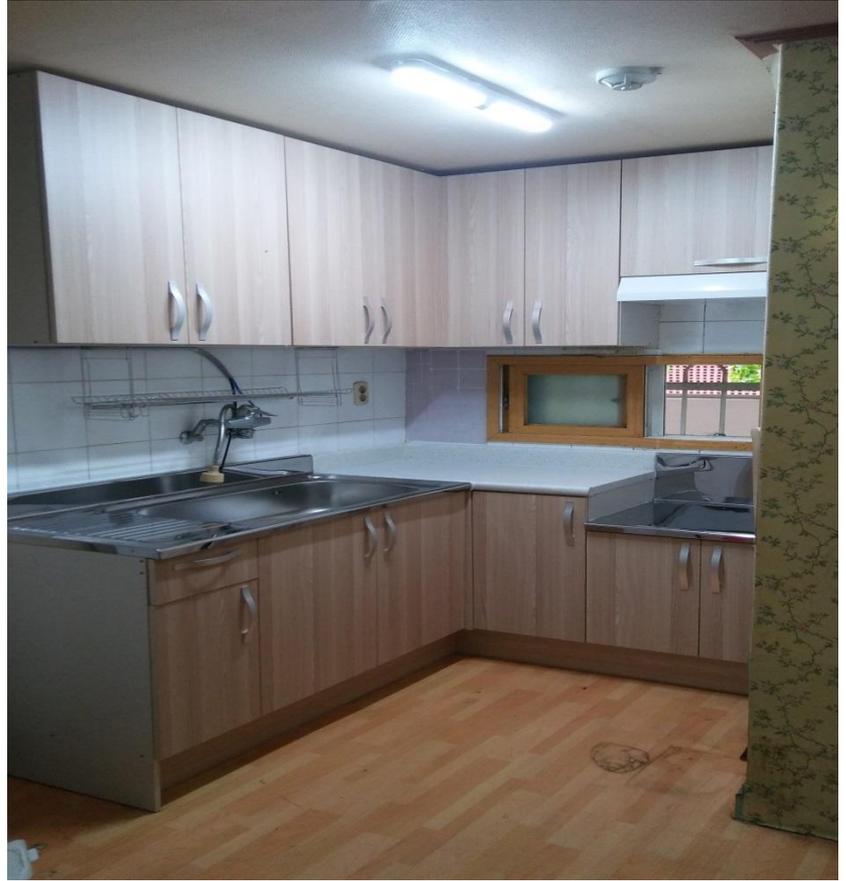
보수 후



보수 전



보수 후



보수 전



보수 후



복지허브화는 무엇인가?



- 찾아오는 민원인의 신청 · 접수를 처리하던 곳에서 먼저 찾아가 대상자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복지대상을 발굴 하는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이웃이 이웃을 보살피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로 변경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체감도 향상

洞 복지허브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16.04.01.

- 천곡동 선도지역 맞춤형 복지팀 설치 (기본형)
- 사회복지 6급, 사회복지 7급, 사회복지 9급, 민간인력 2명
- 자치법규 개정 (2016.5.13.) : 맞춤형복지팀 설치

2016.06.01.

- 북평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 (기본형)
- 사회복지 6급, 사회복지 7급, 사회복지 9급, 민간인력 2명

2016.08.31.

- 복지허브화 확대추진을 위한 자체법규 개정
- 발한동, 동호동 권역형 2개소 행정복지센터 설치 반영
- 선도지역 (천곡동) 동장 복지직 직렬 반영

洞 복지허브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16.09.

- 발한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 (권역형 - 묵호동, 망상동 포함)

2016.12.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부문) 대상 수상

2017.1.

- 동호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 (권역형-부곡동 포함)
- 기본형으로 운영중인 북평동 권역형 전환 (송정동 포함)

2017.06.

- 북삼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 (권역형 - 삼화동 포함)
- 10개동 복지허브화 추진 완료 !!

" 좋은이웃 행복지기단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동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제발굴 워크숍



발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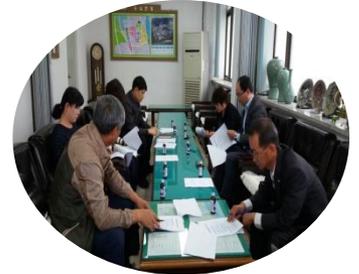
목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망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삼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북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북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천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洞 지역특화사업 현황

◎ 2016년 허브화 추진동

동별	사업내용
천곡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하호호 웃음과 함께 하는 즐거운 인생 • 꽃과 함께 사랑을 심고
북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뒷들나눔은행 • 행복발래방 • 우리동네 복지사 (민간인적자원 활용)
발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발한동 만들기 (저소득층 겨울철 단열에어캡 지원)
목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복지상담소 운영 • 난방사각지대 해소 사업
망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송보송 희망클린 • 행복도시락 사업



洞 지역특화사업 현황

◎ 17년 상반기 중 추진 예정

동별	사업내용
송정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밀반찬 지원 사업
북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협의체 밴드 개설• 이동복지상담소 운영
부곡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마지기 사업
동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동네 119 (취약계층 경보수 신속지원)
삼화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읍면동 복지 허브화 대상(5,000만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대회 대상(4,000만원)



여성친화도시 재 지정

2011 지정 / 2016 재지정

여성친화도시



여성가족부



동해시
DONGHAE CITY

Thank You!

출생에서 100세까지 모두가
영복안 복지도시 동행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